#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(2차)안 의견제시의 건
(의안번호 제1144호)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. 12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1. 13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9. 1. 22 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사유

○ 목 적

- 조선산업특구 중 내산지구의 원활한 특구조성을 위해 사업 확장이 불가피하여 특구계획을 변경코자 함.

○ 주요변경내용

- 사업계획 변경

· 내산지구 사업면적 추가(7,217㎡)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

## 3. 청취내용 : 고성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(2차)안

가. 특구계획 변경개요

○ 특구의 명칭 : 고성조선산업특구(변경없음)

○ 위 치 :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지구(변경없음)

○ 특구의 면적 (단위 : ㎡)

| 구 분 | | 계 | 육상부 | 해상매립부 | 공유수면점사용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총 괄 | 당초 | 2,644,494 | 933,744 | 1,367,924 | 342,826 |
| | 변경 | 2,651,711 | 940,961 | 1,367,924 | 342,826 |
| | 증 | 7,217 | 7,217 | 0 | 0 |
| 내산지구 | 당초 | 216,101 | 51,366 | 133,660 | 31,075 |
| | 변경 | 223,318 | 58,583 | 133,660 | 31,075 |
| | 증 | 7,217 | 7,217 | 0 | 0 |
| 양촌·용정 지구 | 당초 | 1,920,492 | 731,988 | 936,849 | 251,655 |
| | 변경 | 1,920,492 | 731,988 | 936,849 | 251,655 |
| | 증감 | 0 | 0 | 0 | 0 |
| 장좌지구 | 당초 | 507,901 | 150,390 | 297,415 | 60,096 |
| | 변경 | 507,901 | 150,390 | 297,415 | 60,096 |
| | 증감 | 0 | 0 | 0 | 0 |

○ 특화사업(변경없음)

- 내 산 지 구 : 조선기자재 생산(조선블럭 및 조선관련 파이프 등)
- 양촌·용정지구 : 중·대형 특수선박 건조(LNG, VLCC 등)
- 장 좌 지 구 : 중·소형 선박 및 조선기자재 생산

○ 특화사업자(변경없음)

| 구 분 | 성명(명칭) | 대표자 | 주 소 |
|---|---|---|---|
| 내산지구 | 삼강엠앤티(주) | 송무석 | 경남 밀양시 하남읍 양동리 180-7 |
| 양촌·용정지구 | 삼호조선해양(주) | 임문규<br>신현철 |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278-1 |
| 장좌지구 | (주)혁신기업 | 최용혁 |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23-3 |

○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

(당 초)

-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
  ·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(법 제31조)
  · 국·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(법 제36조의2)
  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(법 제36조의12)
- 토지이용에관한 규제특례사항
  ·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특례(법 제39조)
  ·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의제 특례(법 제40조)

(변 경)

-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 변경
  · 국·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(법 제36조의2)
-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사항 변경
  ·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특례(법 제39조)
  ·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의제 특례(법 제40조)

○ 재원조달방법

- 총사업비 : 6,038억원 → 6,048억원(증10억원)
  · 내산지구 : 1,000억원 → 1,010억원(증10억원)
- 조달방법 : 전액 민자유치

○ 특화사업의 사업시행기간(변경없음)

- 내 산 지 구 : 2007년 ~ 2010년
- 양촌.용정지구 : 2007년 ~ 2012년
- 장 좌 지 구 : 2007년 ~ 2010년

나. 고성군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안

○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(변경)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
○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

## 4. 추진경위

○ 2007. 7. 25 : 특구지정 고시(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-36호)

○ 2007. 8. 28 : 경남도/고성군/특화사업자 이행협약(MOA) 체결

○ 2008. 7. 23 : 장좌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및 전면 착공

○ 2008. 10. 10 : 내산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및 전면 착공

○ 2008. 11. 7 : 양촌.용정지구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인가 및 전면 착공

○ 2008. 12. 31 : 특구계획 변경 고시(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-235호)

○ 2009. 1. 2 : 특구계획 변경(2차)안 주요내용 열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

○ 2009. 1. 19 : 특구계획 변경(2차)안 공청회 개최

○ 2009. 1. : 지방의회 의견청취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조선산업특구중 내산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

○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공시설용지 2,800㎡ 감소되며, 공업용지 6,648㎡ 증가, 녹지면적 3,369㎡ 증가되어 총 7,217㎡가 증가 되었습니다.

○ 제1차 특구계획 변경시 미보상토지의 수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하였는데 현재 보상추진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, 주차장 면적이 당초보다 180㎡가 감소되어도 주차문제는 없는 것인지,

○ 또한 특구조성 완료 후 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며, 신청지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,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등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.

## 6. 질의 및 답변 :

○ 문 : 조선특구의 면적 확대는 바람직하나 관련 실과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?

◉ 답 : 문화재 부분 등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.

○ 문 : 조선특구 지역내 국·공유지 대부계약 등 문제는 없는지?

◉ 답 : 특구지역내 국·공유지는 당초 대부 계약시 국가나 고성군이 필요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.

○ 문 : 특구지역의 한곳만 늘어나고 다른 곳은 변경이 없지요?

◉ 답 : 네 그렇습니다.

○ 문 : 조선특구지역의 미 보상된 토지는 수용하기 전에 한번 더 설득하고 추진하기 바람.

◉ 답 : 수용은 마지막 단계로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겠습니다.

## 7. 토 론 : 없음

## 8. 심사결과 :

○ 2009. 1. 2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